

제193회 임시회
2001. 10. .

심 사 보 고 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2001. 1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10월 9일

○ 회부일자 : 2001년 10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1. 10. 17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홍 기)

가. 제안이유

- 세계의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용공간이 요구되어
- 노후된 충주시 노동회관을 철거하고 명실상부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계획에 의하여
- 이에 따른 재산의 처분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재산의 처분 >

- 대 상 : 충주시 충의동 14번지 외 3필지
- 규 모 : 토지 866㎡ (4필지)
- 재산가액 : 411,283천원 (개별 공시지가의 가격임)

※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

- 규 모 : 부지 906㎡(274평), 건축 2,409㎡(730평, 지하1, 지상3층)
- 사 업 비 : 2,956백만원(국비 1,153, 도비 250, 시비 1,553)
- 추진기간 : 1999년 ~ 2002년 (계속사업 추진)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도유재산인 충주시 충의동 14번지 외 3필지 866㎡에 대하여 매각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재산의 처분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99년도 (국비 1,153백만원)와 2000년도 (도비 250백만원)에
확보하였는데도,

연초 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